

		<b>보 도 자 료</b>		
		<b>배 포 일</b> 2018. 9. 11.(화) 총 4매(본문 2, 참고 2)		
<b>담당 부서</b> 지도교섭과		<b>담 당 자</b> • 과장 임태훈, 사무관 장민규 • ☎ (044)200-5560, 5563		
<b>보 도 일 시</b>		2018년 9월 1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해수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기 나서

- 12일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개최... 기관 간 협력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일(수) 오후 2시 부산웨스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책회의는 다가오는 10월 동해안 오징어 조업시기를 맞아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을 밝혀야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조업방식이다. 이는 적법하게 오징어를 잡는 중·소형 채낚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의 자원 고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불법 수익금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배분되어 정확한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오징어 공조조업 방식]

- ①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여들게 한다.
- ② 트롤어선이 가까이 접근하여 끌이그물(트롤어구)을 펼친 후, 어구를 끌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징어를 잡는다.
- ③ 오징어를 판매한 수익금은 조업에 가담한 트롤·채낚기 어업인이 나눠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먼저 불법 공조조업 단속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유관기관 합동단속 ▲ 어선위치 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들은 불법 공조조업 외에 다른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참고 2 ‘오징어 공조조업 외 불법조업 형태’ 참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제64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조업 등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업인들도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관련 사진**



트롤-채낚기 어선 공조조업 방식 예시



CCTV에 촬영된 불법 공조조업 모습



불법 어획물



불법 광력설비 추가 설치

**1.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 대형트롤어선은 동경 128도까지의 범위에서만 조업이 허용되나, 이를 어기고 동경 128도를 지나 동쪽으로 벗어나서 불법 조업하는 행위

\* 행정처분 : 1차(어업정지20일), 2차(어업정지30일), 3차(어업정지40일)

**2. 채낚기어선의 광력(밝기) 위반\* 조업**

: 채낚기어선은 톤수별로 광력(밝기)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다음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1)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81킬로와트
- 2)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02킬로와트
- 3)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20킬로와트
- 4)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32킬로와트
- 5)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141킬로와트

**3. 선미식 불법 조업**

: 선미식 조업은 그물을 선박의 뒤쪽에 달아서 끄는 조업방식으로, 선미식 조업을 허가받지 않은 어선들은 어선의 측면으로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잡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선미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 현재 국내에 선미식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은 14척이 존재 / 현측식은 25척

**4. 선미경사로 불법 시설 설치**

: 선미식 조업을 위해서는 선미에 경사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선미식 조업을 허가받지 않은 어선이 이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